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윤상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114 발의연월일: 2024. 12. 2.

발 의 자:윤상현・이헌승・안철수

서일준 · 김은혜 · 백종헌

정성국 • 김선교 • 우재준

구자근 • 이양수 • 이종배

윤영석 · 김태호 · 성일종

이철규 • 김도읍 • 김위상

의원(18인)

제안이유

2010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제동원조사법"이라 한다)이 제정된 후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강제동원조사위원회")의 활동이 2015년 말에 공식 종료되었음.

그러나, 그 후에도 군인·군무원·노무자 등으로 국외강제동원된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2018년 10월 30일 및 11월 29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강제동원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동안 피해 조사 또는 위로금 등의 지급 신청을 하지 못했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음.

한편, 강제동원조사법에 따르면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에게만 피해 지원이 이루어졌는바, 위로금 규모가 과소하고, 국내 강제동원 피

해자의 경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강제동원조사법을 폐지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내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적 정 위로금, 미수금 지원금 등의 수급 기회를 균형 있게 부여할 수 있 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태평양전쟁 전후 시기 일제의 강제동원에 따른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위로금을 지원하고,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을 위한 지원사업 및 후세에 대한 교육사업 등을 강화함으로써 이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아픔을 치유하고 국민화합 및 세계평화와 인권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이 법의 "강제동원 피해자"란 강제동원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일 제강제동원피해조사및위로금등지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결정한 "강제동원 희생자"와 "강제동원 생환자", "미수금피해자"를 말함(안 제2조).
- 다. 국가는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국민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사업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함(안 제3조 및 제4조).
- 라.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함(안 제5조).

- 마.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 및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자녀로 함(안 제6조).
- 바. 강제동원되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그 유족에게 강제동원 희생자 1명당 1억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강제동원 되어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경우 강제동원 희생자 1명당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로금을 지급하되, 종전 강제동원조사법에 따라 지급된 금액은 공제 후 지급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 사. 강제동원 생환자 또는 그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 아. 미수금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지급받을 수 있었던 미수금을 당시의 환율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8조).
- 자. 강제동원 피해자 중 생존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지 원금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9조).
- 차.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하여 일본국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위로금 등의 지급을 제외하도록 함(안 제10조제5호).
- 카. 위로금 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일제강제동원피해조사및위로금등지급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1조).
- 타.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하되, 1년 이

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위로금 및 미수금 지원금의 지급기간은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하여 6년 이내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1조).

파. 일제 강제동원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강제동원 피해자 및 그유족을 지원하며, 평화와 인권을 신장하기 위하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39조).

법률 제 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태평양전쟁 전후 시기 일제의 강제동원에 따른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위로금을 지원하고,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을 위한 지원사업 및 후세에 대한 교육사업 등을 강화함으로써 이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아픔을 치유하고 국민화합 및 세계평화와 인권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강제동원 피해"란 일제의 국가총동원체제 시기인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기간(국외로 강제동원된 사람의 경우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의 기간을 포함한다) 중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군무원·노무자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
- 2. "강제동원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제1호에 따른 강제동원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11조제2호 에 따라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 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7174호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으로 제정되어 법률 제10143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지된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3조제2항제4호 또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8조제3호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 3. "강제동원 희생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강제동원 피해자 중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 중에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11조제3호에 따라 강제동원 희생자로 결정 된 사람
 - 나. 강제동원 피해자(제2호나목에 따른 강제동원 피해자로 한정한다) 중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 중에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사람
 - 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호제6호에 따라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 라.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의 경우는 1938년 4월 1일부터 1

- 990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 4. "강제동원 생환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강제동원 피해자 중 강제동원 희생자에 해당되지 못한 사람으로서 제11조제5호에 따라 강제동원 생환자로 결정된 사람
 - 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7호에 따라 국외강제동원 생환자 로 결정된 사람
- 5. "미수금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 중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강제동원되어 노무제공 등을 한 대가로 일본국 및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수당, 조위금 또는 부조료 등(이하 "미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으로서 제11조제3호에 따라 미수금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 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6호에 따라 미수금피해자로 결정 된 사람
-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고 강제동원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

한 위로금 등 지급 및 복지지원사업, 추도·위령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국민의 의무) 모든 국민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국가의 사업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6조(유족의 범위 등) ① 이 법에서 "유족"이란 강제동원 희생자, 강제동원 생환자, 미수금피해자 가운데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의 친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2호·제3호·제5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 1. 배우자 및 자녀
 - 2. 손자녀
 - 3. 증손자녀
 - 4. 형제자매
 - 5. 형제자매의 자녀
 - ② 제7조에 따른 위로금 및 제8조에 따른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한다.
 - ③ 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유족은 제7조에 따른 위로금 및 제8조에 따른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지분으로 위로금 및 미수금 지원

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 제7조(위로금) ① 국가는 강제동원 희생자 또는 그 유족에게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한다
 - 1. 강제동원 되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강제동원 희생자 1명당 1억원. 다만,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 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호에 따라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2. 강제동원 되어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강제동원 희생자 1명당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장해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다만,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 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호에 따라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② 국가는 강제동원 생환자 또는 그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 제8조(미수금 지원금) 국가는 미수금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미수금 피해자가 일본국 또는 일본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미수 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시 환율,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제9조(의료지원금) ① 국가는 강제동원 피해자 중 생존자가 노령·질

병 또는 장애 등으로 치료가 필요하거나 보조장구(補助裝具)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 또는 보조장구의 구입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 부를 지원한다. 이 경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 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비용과 이 법에 따른 의료지원금의 차액만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위로금등 지급의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위로금, 제8조에 따른 미수금 지원금, 제9조에 따른 의료지원금(이하 "위로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1.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미수금피해자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경 우
 - 2.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등 별도 법률에 따라 강제동원 기간 동안 입은 피해에 대하여 이미 일정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유족
 - 3. 1947년 8월 15일부터 1965년 6월 22일까지 계속하여 일본에 거주 한 사람
 - 4.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아니한 사람

5.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하여 일본국 및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유족

제2장 일제강제동원피해조사및위로금등지급심사위원회

- 제11조(일제강제동원피해조사및위로금등지급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업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일제강제동원피해조사및위로금등지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강제동원 피해판정 불능결정에 관한 사항
 - 2.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 3. 강제동원 희생자 및 그 유족 또는 미수금피해자 및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 4. 강제동원 희생자의 부상으로 인한 장해의 판정에 관한 사항
 - 5. 강제동원 생환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 6. 위로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 7.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사항
 - 8. 결과보고서 작성 등 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인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③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 위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위원의 보호 등) ① 누구든지 직무를 행하는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원 또는 직원에게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강제동원 피해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 나 제공하려 한다는 이유로 해고·정직·감봉·전보 등 어떠한 불 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 ③ 위원회는 강제동원 피해의 조사와 관련한 증거·자료 등의 확보 또는 인멸의 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강제동원 피해의 실태를 밝히거나 증거·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사람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보상 또는 지원의 내용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위원회 등의 책임면제) 위원회, 위원, 직원 및 위원회의 위촉 또는 위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감정인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작성·공개된 보고서 또는 공표 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16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 ② 위원은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 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및 형의 선고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 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③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7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3. 정당의 당원
-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③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정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을 한 경우
 - 2. 위원이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위로금등 지급 신청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 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②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인은 위원에게 심의 · 결정의 공정성을 기

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위원 본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 · 결정을 회피할 수 있다.
- 제19조(위원회 등의 회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0조(사무국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③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임명한다.
 - ④ 소속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 반직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6급 이하 공무 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⑤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21조(위원회의 존속기간 등) ①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다만, 존속기간 내에 위원회의 업무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 내에 업무를 완료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업무처리 상황과 존속기간 내 완료를 위한 계획 또는 대 책을 매 반기별로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7조에 따른 위로금의 지급 및 제8조에 따른 미수금 지원금의 지급 기간은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하여 6년 이내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행정 안전부장관이 이를 승계한다.
- 제22조(결과보고서 작성 등) ① 위원회는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종합적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 일제 강제동원 피해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으로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을 할 수 있다.
- 제24조(공무원의 파견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사람에게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

제3장 위로금등 지급에 관한 업무

- 제25조(강제동원 피해 조사 신청) ① 강제동원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되는 날까지 강제동원 피해의 조사를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강제동원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유족에게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6조(신청의 각하) ① 위원회는 제25조에 따른 강제동원 피해의 조사나 제31조에 따른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할 수 있다.
 - 1. 신청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신청의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원회가 각하한 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신청하였던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신청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위원회는 강제동원 피해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 제27조(강제동원 피해 조사 방법 등) ① 위원회는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위로금등의 지급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신청인·증인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출석요구, 증언 또는 진술청취
 - 2. 관계인,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 의 제출 요구
 - 3. 강제동원 피해가 발생한 장소 등에 대한 실지조사
 - 4.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요청
 -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관련 자료나 물건의 제출,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관계 기관 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열람, 실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 등의 장은 그 자료가 외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일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성실히 교섭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관계 기관을 통하여 외국의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에 관하여 해당 국가의 정부에 그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8조(신청의 기각) 위원회는 강제동원 피해 및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을 조사한 결과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 1. 신청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 2. 강제동원 피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3. 그 밖에 강제동원 피해 조사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제29조(피해판정 불능결정 및 재조사) ① 위원회는 제25조에 따른 조사 신청 후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지 못하거나 밝힐수 없는 경우 피해판정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을 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26조에 따른 각하 결정, 제28조에 따른 기각결정 및 제1항에 따른 강제동원 피해판정 불능결정 이후 강제동원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가 발견된 경우 강제동원 피해 조사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재조사할 수 있다.
- 제30조(강제동원 피해의 결정 등) ① 위원회는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 1. 강제동원 피해 여부

- 2. 해당 피해의 원인 · 배경
- 3.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결정을 한 후, 필요한 경우 강제동원 피해 조사 등에 대하여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공표할 수 있다.
- 제31조(위로금등의 지급 신청) ① 위로금등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되는 날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강제동원 피해자 및 그유족에 관하여 조사 중인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라 결정서 정본을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와 그 밖의 관련 증거자료에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보완하여야할 사항 및 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경우 보완 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보완과 관련된 사항을 자세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2조(위로금등 지급 신청의 심의와 결정) ① 위원회는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 여부와 그 금액을 심 의·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심의·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강제동원 피해자 및 그유족에 관하여 조사 중인 경우에는 그 조사가 끝날 때까지 심의·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31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서류를 보완하는 경우에는 보 완된 서류를 받은 날을 지급 신청일로 본다.
- ③ 그 밖에 심의 ·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3조(결정서 송달 및 재심의) ① 위원회는 제26조에 따른 각하결정, 제28조에 따른 기각결정, 제29조에 따른 피해판정 불능결정, 제30조에 따른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의 결정, 제32조에 따른 위로금등 의 지급 여부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③ 강제동원 피해 조사 신청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송달을 할 때에 송달대상자에 게 재심의 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서를 받은 사람은 받은 내용에 이의 가 있는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

- 로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⑥ 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은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재심의 결정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 ⑦ 재심의 결정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⑧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재심의 신청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4조(신청인의 동의와 위로금등의 지급) ①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위로금등을 지급받으려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② 그 밖에 위로금등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제35조(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 제36조(조세 면제) 위로금등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37조(소멸시효 등) ① 제7조에 따른 위로금 및 제8조에 따른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 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② 제9조에 따른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제31조제1항에 따

른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발생한다.

- 제38조(위로금등의 환수) ① 국가는 위로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위로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 2. 착오나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위로금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다.
- 제39조(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설립 등) ① 국가는 일제 강제동원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강제동원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지원하며, 평화와 인권을 신장하기 위하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설립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 4. 설립 당시의 재산 종류 및 평가액
 - 5. 사업에 관한 사항
 - 6. 이사회 및 조직에 관한 사항

-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8.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0. 존립기간이나 해산사유에 관한 사항
- 11. 정보 공개 및 공고에 관한 사항
- 12. 내부규정의 제정 ·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④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복지지원 사업
- 2. 강제동원 피해 관련 문화·학술사업 및 조사·연구사업
- 3.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와 인권의식을 고취하는 교육사업
- 4.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 발굴・봉환 사업
- 5. 강제동원 희생자 추도공간의 조성 및 관리 등 추도위령사업
- 6. 국외 희생자 추도순례 사업
- 7. 미수금, 우편저금 등 미지급 공탁금 등의 환수를 위한 다른 나라 정부와의 교섭 및 소송 지원 사업
- 8. 사료관, 박물관, 역사관 등의 건립 및 운영 사업
- 9. 정부에 등록된 피해 단체 및 법인과의 교류협력사업
- 10. 관련 행정기관의 위탁사업
- 11.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 ⑤ 재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며, 이사장 및 감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고,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이사장,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⑥ 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두며,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⑦ 정부는 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⑧ 재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 ⑨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 1. 제7항에 따른 정부의 보조금
- 2. 제8항에 따른 기부금품
- 3. 그 밖의 수익금
- ① 재단은 제4항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위원회, 행정안전부 또는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① 재단이 해산한 때에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단을 지도·감독한다.
- ③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법인

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보칙

- 제4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위원회는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로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재단 또는 금융회사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41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 위원회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사람, 위원회의 위촉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 민간단체 및 그 관계자 또는 재단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 문서 · 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재단의 업무수행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 위원회가 아닌 자는 일제강제동원피해조사및위로금등지급심사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다.

- ②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직원 또는 재단의 임원·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 제44조(벌칙) ①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를 행하는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그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등을 지급받거나 받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④ 제41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ㆍ기

피한 자

- 2. 제42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 전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일제강제동원피해조사및위로금등지급심사위원회 위원,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임명 등 일제강제동원피해조사및위로금등지급심사위원회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 제3조(소관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계한 대일항쟁기강제동원 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이 법으로 다시 구성되는 일제강제동원피해조사및위로금등지급심사위원회가 승계한다.
- 제4조(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에 따라 일제강제동원피해조사및위로금등지급심사위원회가 승계하는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이 법 시행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행한 고

- 시·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일제강제동원피해조사및위로금등지급심사위원회의 행위 또는 일제강제동원피해조사및위로금등지급심사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5조(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 재단(이하 "구법인"이라 한다)은 총회 의결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신법인"이라 한다)이 그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구법인은 신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구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소관업무, 권리·의무 및 재산은 신법인이 승계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신법인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신법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 제6조(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구법인의 임직원은 신법인의 임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 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폐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 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한다.